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1
----------	-----

제출년월일 : 2000. . .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소비자보호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 시행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강구 및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소비자보호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실현을 위한 도지사의 의무사항을 정함 (안 제3조)
- 소비자의 생명·건강·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 물품의 조사 및 시험검사, 회수, 수거,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함 (안 제4조 내지 7조)
-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거래를 금지하고 물품 또는 용역의 표시·광고·실태와 계량·규격의 실태를 조사하며 부당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안 제8조 내지 제12조)
-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비자피해구제창구를 설치 운영하며 소비자피해구제기구와 긴밀히 협조하고 피해사례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내지 제17조)

- 소비자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검사·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안 제18조, 제19조)
- 소비자 단체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하고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조직활동과 각종 시험·검사 시설의 설치 구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 내지 제22조)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사항을 정함 (안 제23조 내지 제29조)
-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물품·시설에 검사 및 자료제출 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결과를 공표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0조 제33조)
- 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와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고 과태료의 부과 금액 및 부과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34조)

] 조례안 : 별첨

] 근거법령 :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 5조

] 기타 참고자료

- 관련법규(부분발췌) : 별첨
- 시·도소비자보호표준조례(개정)안 : 별첨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보호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에 열거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

나. 제공된 물품을 농업(축산업 포함)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다만, 축산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축산업자 및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는 제외

2.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의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비자 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소비자안전시책의 강구
2. 소비자정보제공과 교육의 활성화
3. 사업자의 소비생활과 관련된 정보제공 유도
4.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행위의 방지대책의 강구
5. 소비생활관련 주요정책결정에 소비자의사의 반영
6. 소비자피해의 구제·상담
7.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8.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제2장 소비자권리의 보장

제1절 안전대책의 강구

제4조 (안전대책의 강구)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건강·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조사 및 시험검사) 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1. 물품 및 용역의 성분·함량·구조 등 그 주요한 내용
2.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상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3. 기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위해물품의 회수 등) 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물품 또는 용역을 회수하거나 제조 또는 판매를 중지하는 등 위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위해물품의 수거·파기명령 등) ①도지사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그 물품의 수거·파기를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금지 또는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를 명할 수 있고 당해 물품 및 용역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위해물품을 수거하여 파기하는 때에는 사업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기간 사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거하여 파기하는 공무원 외에 관계공무원 1인 이상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2절 부당거래의 방지 등

제8조 (부당거래의 조사) 도지사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거래의 실태를 조사하고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부당거래의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당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판매 의도를 숨기고 접근하거나 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오인을 초래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2. 소비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집요하게 설득하거나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3. 소비자의 경솔·무경험·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시키는 행위
4. 소비자나 소비자의 가족을 기만하거나 협박하는 등 부당하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하게 하는 행위
5.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부당한 판매방법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0조 (시정조치)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 (표시·광고실태의 조사) ①도지사는 소비자가 표시로 인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선택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표시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방해받지 않도록 광고에 대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광고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계량·규격실태의 조사) ①도지사는 소비자가 계량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생활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규격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소비자피해의 구제

제13조 (피해구제창구의 설치·운영) ①도지사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처리하기 위하여 도에 소비자피해구제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소비자행정, 피해구제의 상담·처리를 위하여 상담창구 인력 1인 이상을 지정배치 하여야 하고 이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피해구제의 신청) 소비자는 소비자피해구제창구에 방문, 서신,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피해구제의 처리) 소비자피해구제창구에서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교환, 환불, 수리 등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 (다른 피해구제기구와의 협조) 도지사는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 피해구제기구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거나 피해구제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피해사례의 공표) 도지사는 소비자 피해사례 가운데 주민에게 알리어 피해의 확산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사례집을 발간하거나 공보 기타의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제4절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지원

제18조 (소비자의견 반영 및 정보제공) ①도지사는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을 결정하는 경우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시책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험 및 검사) ①도지사는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을 받은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상당한 기간내에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는 물품 및 용역의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해당 시험·검사 또는 조사가 주민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20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도지사는 소비자단체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소비자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그 등록부를 비치하여 일반에게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보조금의 지급) 도지사는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조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시험·검사시설 지원) 도지사는 물품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소비자단체의 시험·검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시험·검사시설의 설치·구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23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에 충청북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4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소비자보호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2. 소비자보호 관련 행정조직의 설치, 운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위원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부서의 장과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대표, 사업자 대표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위원회에 소비자보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소비자보호담당 사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 또는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9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의 참석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30조 (검사 및 자료제출)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물품제조공정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당해 사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명할 수 있다.

1.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과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소비자보호를 위한 관계법령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고 검사 등에 의하여 알게된 내용을 이 조례의 시행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공표) 도지사는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제5조에 의하여 시험·검사 및 조사한 결과 사업자가 위반한 사항
2. 사업자의 소비자보호관계법령 및 조례 위반 내용
3. 이 조례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의 내용

제32조 (청문) 도지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공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별 칙

제3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소비자보호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른다.

-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⑥과태료의 금액과 그 부과기준, 부과징수 등에 관한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부분발췌)

□ 소비자보호법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장소·가격·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제6조 (위해의 방지) ①국가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물품 및 용역의 처분·함량·구조 등 그 중요한 내용
2.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상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3. 기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제8조 (표시의 기준) ①국가는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이나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선택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관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상품명·용도·성분·재질·성능·규격·용량·허가번호 및 용역의 내용
2. 물품을 제조·수입·가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물품의 원산지
3. 사용방법, 사용 및 보관상의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
4. 제조년월일, 품질보증기간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효기간
5. 표시의 크기·위치·방법
6.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 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처리방법

제9조 (광고의 기준제정) ①국가는 물품 또는 용역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도한 소비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용도·성분·성능·규격·원산지 등의 광고에 있어서 허가 또는 공인된 내용만으로 광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특정내용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광고함에 있어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특정용어 및 특정법규의 용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광고의 매체 및 시간대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10조 (거래의 적정화) ②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11조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 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 및 용역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과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소비자피해의 구제)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해의 방지 등) ①사업자는 제6조 제1항의 기준에 위배되는 물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사업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3 (수거·파기명령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물품 및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를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금지 또는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를 명할 수 있고, 당해 물품 및 용역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파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직접 수거하여 파기할 수 있다.

제17조의5 (법위반사실의 공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9조의2 (권한의 위임·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2조 (검사와 자료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 시설 및 물품제조공정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당해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에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3조 (벌칙)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절·방해 또는 기피한 자 및 관계물품 또는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한 자
2. 삭제<99.2.5>
3.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5조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 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 강구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이나 정책결정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권고·공표 등
4. 소비자단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소비자의 조직활동의 지원
5.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운영 등
6. 기타 지역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41조의2 (권한의 위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
2. 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수거 또는 파기, 물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의 금지, 용역제공 금지, 관련 시설의 개수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명령
3. 법 제1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수거 또는 파기
4. 법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한 법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명령
5.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고 또는 물건·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명령
6.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매년 당해 업무의 처리실적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 (검사와 자료 제출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거나 사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물품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축산법

제27조 (가축시장의 개설 등) ①가축시장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이하“축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개설·관리한다 .

□ 수산업법

제41조 (허가어업) ①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해외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이하 “원양어업”이라 한다)

□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원양어업의 종류) ①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양연승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원양기선저인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원양트롤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망구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원양선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원양자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6. 원양봉수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봉수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원양채낚기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원양통발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9. 원양모선식어업 : 냉장·가공설비 기타 처리설비를 갖춘 모선과 이에 부속되는 어로선에 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0. 원양안강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행정자치부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 ☎ (02)3703-4946 / FAX 3703-5548
 재정경제과 과 장 서 호 원 담당 순 영 재 담당 자 양 윤 규

문서번호 재경 41610 - 1561
 시행일자 1999. 12. 22. (3년)
 경 유
 수 신 충청북도지사
 참 조

선 략	과장		지 사
접	일자 시각 1999. 12. 22.		결 재
수	번호 748		공 략
	처 리 과 1212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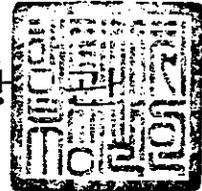
제 목 시·도소비자보호표준조례(개정)안 통보

소비자보호법과 동법시행령이 '99.4.6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험방지를 위한 시험·검사·조사, 물품의 수거·파기, 법 위반사실의 공표 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장 권한의 시·도지사에게 위임 및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정보요청권 신설 등 개정·신설된 내용을 반영한 시·도소비자보호표준조례(개정)안을 통보하오니, 이를 참고로 귀 시·도의 소비자보호조례를 개정(제정)하여 소비자보호업무 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도소비자보호표준조례(개정)안 1부. 끝.

행정자치부장

전결 재정경제과장 서 호 원



수신처 내1-18

시·도소비자보호표준조례(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보호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에 열거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

나. 제공된 물품을 농업(축산업 포함)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다만, 축산업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축산업자 및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는 제외

2.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도지사의 의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소비자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소비자안전시책의 강구
2. 소비자정보제공과 교육의 활성화
3. 사업자의 소비생활과 관련된 정보제공 유도
4.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 행위의 방지대책의 강구
5. 소비생활 관련 주요 정책결정에 소비자의사의 반영
6. 소비자피해의 구제 상담
7.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8.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제2장 소비자권리의 보장

제1절 안전대책의 강구

제4조(안전대책의 강구)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건강·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 및 시험검사)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1. 물품 및 용역의 성분·함량·구조 등 그 주요한 내용
2.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상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3. 기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해물품의 회수 등) 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물품 또는 용역을 회수하거나, 제조 또는 판매를 중지하는 등 위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위해물품의 수거·파기명령 등) ①시·도지사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그 물품의 수거 파기를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금지 또는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를 명할 수 있고, 당해 물품 및 용역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위해 물품을 수거하여 파기하는 때에는 사업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기간 사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거하여 파기하는 공무원 외에 관계공무원 1인 이상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2절 부당거래의 방지 등

제8조(부당거래의 조사) 시·도지사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거래의 실태를 조사하고,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거래의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당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판매 의도를 숨기고 접근하거나, 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오인을 초래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2. 소비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집요하게 설득하거나,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3. 소비자의 경솔·무경험·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시키는 행위
4. 소비자나 소비자의 가족을 기만하거나 협박하는 등 부당하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하게 하는 행위
5.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부당한 판매방법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0조(시정조치)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표시·광고실태의 조사) ①시·도지사는 소비자가 표시로 인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선택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정한 표시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방해받지 않도록 광고에 대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정한 광고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계량·규격실태의 조사) ①시·도지사는 소비자가 계량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생활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규격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소비자피해의 구제

제13조(피해구제창구의 설치·운영) ①시·도지사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에 소비자피해구제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소비자행정·피해구제의 상담·처리를 위하여 상담창구인력 1인 이상을 지정배치 하여야 하고 이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소비자피해구제창구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피해구제의 신청) 소비자는 소비자피해구제창구에 방문, 서신,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피해구제의 처리) ①소비자피해구제창구에서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교환, 환불, 수리 등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피해구제의 처리방법, 처리기간,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다른 피해구제기구와의 협조) 시·도지사는 소비자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등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거나 피해구제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피해사례의 공표) 시·도지사는 소비자피해사례 가운데 주민에게 알리어 피해의 확산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사례집을 발간하거나 공보 기타의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제4절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지원

제18조(소비자의견 반영 및 정보제공) ①시·도지사는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을 결정하는 경우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시책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하역금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시험 및 검사) ①시·도지사는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을 받은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상당한 기간내에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는 물품 및 용역의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의 의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해당 시험·검사 또는 조사가 주민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20조(소비자단체의 등록) 시·도지사는 소비자단체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소비자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그 등록부를 비치하여 일반에게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금의 지급) 시·도지사는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시험·검사시설 지원) 시·도지사는 물품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소비자단체의 시험·검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시험·검사시설의 설치·구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23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4조(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보호 관련조례 및 규칙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2. 소비자보호관련 행정조직의 설치, 운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3.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의 사업타당성 및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판단에 관한 사항
- 5. 기타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25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장은 부시장·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부서의 장과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및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에 소비자보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소비자보호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 또는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9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시·도수당지급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회의참석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보 칙

제31조(검사 및 자료제출)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

여금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물품제조공정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당해 사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명할 수 있다.

1.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과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소비자보호를 위한 관계법령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고, 검사 등에 의하여 알게 된 내용을 이 조례의 시행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공표) 시·도지사는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제5조에 의하여 시험·검사 및 조사한 결과 사업자가 위반한 사항
2. 사업자의 소비자보호관계법령 및 조례위반내용
3. 이 조례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의 내용

제33조(청문) 시·도지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공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벌 칙

제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소비자보호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의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과태료의 금액과 그 부과기준, 부과징수 등에 관한 세부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